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Website](#) | [Archive](#) | [Contact](#)

##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관세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국제조세 Update

#### 한국/캄보디아 조세조약 발효

캄보디아 진출한 우리 기업 세금부담 줄어든다 (파이낸셜 뉴스, 2021.01.29)

<https://www.fnnews.com/news/202101291033420745>

기획재정부는 29일 한·캄보디아 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1월 25일 서명한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올해 1월 29일부터 정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 모두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됐다. 조세조약에 따르면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사무실·공장·지점 등이 9개월 넘게, 자원탐사·개발이 6개월 넘게 지속됐을 때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또 건설활동을 수행할 때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캄보디아 국내세율은 14%인데, 앞으론 최고 10%까지만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제항공소득은

삼정 KPMG

이전가격 & 관세본부

16 February 2021

####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문**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하고,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50% 감면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 국제조세 최신 예규/판례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 2021.01.25

##### 1) 사실관계

- ① 15.9월 생명공학 분석기기,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A(이하 "A법인")는 미화 100달러 상당의 자본금 (100주, 액면가액 \$1)을 불입하여 완전자회사인 미국법인 B(이하 "B법인")를 설립
- ② 15.11월 A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출자지분 20%(시가 약 50억원)를 B법인에 모두 이전하고, 그 대가로 B법인으로부터 B법인의 신주 1주(양도가액 \$1)를 수령함

##### 2)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저히 낮은 가액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해당 차액을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3)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A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가 완전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서, B(완전자회사)가 A(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 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 10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 말레이시아: 적격 이전가격 보고서 미구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제출기한 변경

말레이시아 국세청(Malaysian Inland Revenue Board, (이하 "IRB"))은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납세자는 이전가격 보고서를 과세당국 요청 시 기존 30일이 아닌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보고서 요구 시 미구비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4일 내에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전가격 의무 이행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납세자의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 법인의 이전가격 보고서가 최신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준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상태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와 보고서의 내용이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전가격 리스크 관리에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을 시사합니다. 향후 IRB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전가격 조사 체계를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이전가격보고서: IRB 요구 시 14일 내로 제출

IRB는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11장(11.2.3항 및 11.3.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항	개정안
11 장 2.3항	<p><u>이전가격보고서 제출기한</u>                      (기존) 이전가격 보고서는 연차보고 서식 제출 시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국세청 요청 시 30일 이내 제출                      (추가/개정) 소득세법 1967의 113B항을 도입함으로써 국세청 요청 시 14일 이내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 요청은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이전가격 조사부터 적용됨</p>
11장 11.3.5항	<p><u>과태료 면제 규정</u>                      본 개정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부화 하여 공표함</p> <p>(a)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된 이전가격 조사에 대해 국세청 요청 시 30일 이내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혹은</p> <p>(b)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이전가격 조사에 대해 국세청 요청 시 14일 이내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혹은</p> <p>(c)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준수하는 이전가격 보고서를 구비한 경우</p>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문서 구비 관련 과태료규정은 세무조사 시 산출한 이전가격 차이 조정분에 적용되며,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 시 30%, 이전가격 보고서 미구비 시 50%의 Penalty가 부과되며,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규정(ITTPGL11000-CHAPTER XI-11.3 (Penalty))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국: 주요 신설 이전가격 규정

2021년 1월 14일 태국 국세청의 국세청장은 태국의 새로운 이전가격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2개의 이전가격 및 국외특수관계거래 관련 가이드라인(DGN-CIT No. 400 신고 규정 및 2차 조정 관련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설된 규정은 크게 하기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주주 관련 용역거래 가이드라인 (DGN-CIT No. 400)
2. OECD Guideline상의 DEMPE 규정 수용 (DGN-CIT No. 400)
3.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배당 원천세 규정(2차 조정) 도입
4. 전자 신고 제도 도입

### ■ 주주 관련 용역 거래 및 DEMPE 규정 (DGN-CIT No. 400)

2021년 1월 1일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DGN-CIT No. 400 신고 규정에 대한 핵심 요소는 2019년 6월에 발표된 기존 가이드라인과 유사하지만, 하기와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1. 주주 관련 용역거래

용역거래의 경우,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제공된 용역거래에 대한 보상은 개별 거래에 대한 보상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함

2. OECD Guideline상의 DEMPE 규정 수용

무형자산 관련 거래의 경우, 사용된 자산과 가정된 위험을 고려하여 “개발, 강화, 유지, 보호 및 사용 (Development, Enhancement, Maintenance, Protection, Exploitation, “DEMPE”)” 활동과 관련된 기능을 비교가능 목적으로 고려해야 함.

### ■ 2차 조정(Secondary Adjustment)

2019년 6월 발표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2차 이전가격 조정(실제 과세당국이 최근 세무조사에도 적용)이 있을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초안 및 과세당국 관행에 따르면, 만약 한 납세자에게 높은 수익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1

차 이전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특수관계거래의 당사자가 납세자의 주주일 경우, 현지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세를 차감 후 이전가격 조정을 적용한 금액은 배당 혹은 이자 지급액을 간주하여 원청징수(10%)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DGN-CIT No. 400은 태국 세입법(Thai Revenue Code)의 제70조 및 제70조 bis에 따라 2차 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전자신고 관련 규정 도입 (DGN-TP 규정)

DGN-TP 규정은 기존 발표된 통지(DGN-CIT No. 372를 포함한 해외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보고서에 관한 가이드라인)를 폐지하는 것 외에도 이전가격 신고서식(TP Disclosure Form)을 제출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2020년 1월 1일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DGN-TP 규정에 따르면, 법인, 개인, 파트너십 납세자는 이전가격 신고서식을 제출해야 하는 특수관계 회사 또는 파트너십을 대신하여 신고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전가격 신고서식을 제출해야 하는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태국 국세청 온라인 플랫폼([www.rd.go.th](http://www.rd.go.th)) 또는 재무부의 전자 세무 서비스(<https://etax.mof.go.th>)를 통한 등록절차가 필요함.
- 회사 또는 파트너십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전가격 신고서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세무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인쇄 후 신고서식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와 함께 국세청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이전가격 신고서식의 제출은 회사 또는 파트너십 회사가 조회 번호 및 접수 완료 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됨.

#### ■ KPMG 의견

태국 현지 세법 상 OECD 이전가격 지침을 법제화 하는 동향이 나타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전가격 거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TP 분석 및 보고서 구비를 권고 드립니다.

태국 현지 이전가격 규정상 요구되는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추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태국에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 거래를 수행하고, 사업 운영에서 발생한 총 수입(또는 사업운영에서 파생된 기타 관련수입)이 THB 200 백만(원화 기준 약 7천 4백만원) 이상일 경우, 이전가격 분석 및 보고서 구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구비하는 것은 태국의 새로운 이전가격 규정 및 보고서 요구사항과 관련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수

적일 뿐만 아니라 향후 제안되는 1차 및 2차 이전가격 조정 또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과세당국과의 협상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호주: “중대한 글로벌법인(Significant global entity)” 및 국가별보고서 대상법인(Country-by-country reporting entity)”에 대한 시사점

호주 세무당국(Australian Taxation Office (이하, “ATO”))은 “중대한 글로벌법인 (Significant global entity (이하, “SGE”))로 간주되는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별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개념을 도입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 ■ SGE 정의에 대한 범위 확대

SGE에 대한 개념은 2015년에 발표된 개정세법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SGE는 초기에 다국적기업 세금회피방지법, 국가별보고서 및 재무제표(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 (GPFS))의 보고의무를 따르는 모집단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후 우회수익세, 행정 및 기타 벌금부과 대상의 법인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새로운 SGE에 대한 개념은 보다 확대되어 연간 글로벌 수입이 AUD 10억(약 8,500억원)이상인 기업 중 상장기업이 외의 대주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도 적용됩니다. 이 결과, 확대된 SGE에 대한 개념은 연결 재무제표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부유한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신탁 및 기타 법인유형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 ■ 새로운 SGE 정의에 대한 ATO의 권고안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하기에 해당되는 법인은 SGE법인으로 정의됩니다:

- 글로벌 소득이 AUD 10억이상인 다국적 모기업(Global Parent Entity, 이하, “GPE”)인 경우
-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법인 중에 하나이며, 해당 법인 GPE의 연결기준 매출액이 AUD 10억달러 이상인 경우

여기서 GPE는 회계원칙에 따른 정의로 다른 법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법인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한 GPE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 회계기준(Australian Accounting Principle)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규정은

하나의 지배기업이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보유할 시, 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기업(Investment entity)의 경우, 설립목적이 자본가치상승 혹은 투자손익이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므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결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ATO 개정안에서 명시하는 기업그룹 정의에 따르면, 특정법인이 SGE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연결 매출액 산정 시에는 회계 기준 상 연결대상 제외기준(특정 투자법인 및 중요성 기준에 따른 제외 규정)이 배제되며, 따라서 회계 기준 상 제외되는 법인의 매출액은 SGE를 판단하는 연결매출액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개정안에 따라, 이전에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어 SGE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법인 또한 SGE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집단은 SGE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세무규제 준수업무를 문서화 해야 합니다.

#### ■ 국가별보고서 대상법인(CbC Reporting Entity)

ATO는 국가별보고서 대상이 되는 법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별보고서 대상법인의 정의에서 개인은 제외시키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회계 기준 상 특정 투자법인을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국가별보고서 대상법인을 정의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개정안은 SGE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 기업그룹의 납세협력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며, 국가별보고서 대상기업은 GPFS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해 재무제표 작성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호주 현지 규정 상 다국적기업의 전년도 연결매출액 (AUD 10억 이상)을 기준으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연결매출액 산정 시에는 회계 기준 상 중요성 기준에 따라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제외되는 종속 법인의 발생 매출액을 포함하여 제출 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기 개정안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호주 현지 전문가와 개정안 세부 내역 확인 및 검토의견을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SGE의 정의가 개정됨으로써 납세자가 유념해

야 할 사항은 하기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 SGE에 해당되는 기업 집단의 모수가 확대되며, **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SGE는 국가별보고서 대상법인**으로 분류되어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국가별보고서 대상법인으로서 호주 과세당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 사업자는 **호주 과세당국에 재무제표(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 (GPFS))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본 개정안에서 명시하는 국가별보고서 대상법인 관련 정의는 하기와 같습니다.

#### **개정된 국가별보고서 대상법인 관련 정의**

##### 국가별보고서 대상법인(CbC Reporting Entity)의 정의

하기 1)과 2)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로 정의됩니다.

- 1) 국가별보고서 작성 모기업(CbC reporting parent)인 경우
- 2) 국가별보고서 대상 기업그룹(CbC Reporting Group)에 속하는 기업으로, 해당 그룹 내 관계사가 국가별보고서 작성 모기업인 경우

##### 국가별보고서 대상 기업그룹(CbC Reporting Group)의 정의

하기 1)과 2)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로 정의되며, 개인은 제외됩니다.

- 1) 회계 기준 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포함되는 기업 그룹
- 2) 해당 기업이 NLCG(Notional Listed Company Group)인 경우  
(개정안을 통해 특정 투자법인에 대한 제외 요건은 적용되나 중요성 기준에 따라 제외시키는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국가별보고서 작성 모기업(CbC reporting parent)의 정의

국가별보고서 작성 모기업에서 개인은 제외되며,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법인입니다.

- 1) 국가별보고서 대상 기업그룹에 포함되는 법인으로서,
- 2) 호주 회계기준 (Australian Accounting Principles 또는 Commerci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에 따른 연결 기준 상 타법인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며,
- 3) 연간 글로벌 수입(Annual Global Income)이 AUD 10 억(약 8,500 억원) 이상인 경우



### 3. 관세 이슈 Update

#### 미국, 통화 저평가 이유로 베트남, 중국 상계관세 부과 (한국 등 확대 가능성)

미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동화(VND)와 중국 위안화(CNY)의 가치가 각 정부의 조치로 저평가됐다"며 이로 인해 베트남산 타이어와 중국산 트윈스트 타이어를 수출하면서 혜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국가의 통화 저평가를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한 보조금으로 예비판정 했습니다.

한국 무역협회 보고서는 "지난해 2월 상계관세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특정성 요건에 '무역을 하는 기업군'을 포괄적으로 추가하면서 국제적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환율 보조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통화 보조금 판정 적용 리스크가 매우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아직 상무부의 조사방법론이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았고, 시행규칙 개정과 예비판정 조치가 기존 미국법 및 세계무역기구(WTO)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향후 분쟁과 논란이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환율 보조금 조사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판단하는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 기업을 둔 우리 기업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사로 인한 불이익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환율 보조금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캄보디아 FTA 최종 타결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2월 3일 최종 타결됐으며, 캄보디아는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체결한 네 번째 아세안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화물자동차와 승용차, 건설중장비를 비롯해 쌀, 김 등 농수임산물에 대한 관세도 철폐돼 캄보디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https://kpmg.com/socialmedia)



[kpmg.com/app](https://kpmg.com/app)

